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 구역 표시 안내판 등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의무 부과〉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433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험 구역 표시 안내판 등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의무 부과	3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일 서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위험 구역 표시 안내판 등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u>
<u><신설></u>	

제55조(과태료)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로 정하는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에 따르면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조치는 기상악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한정된 조치로서 일상적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관리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최근 낚시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갯바위나 방파제 등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구조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①시장·군수·구청장이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②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③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낚시를 하는 사람 스스로 안전장비를 갖추고, 경고 안내판과 안전난간을 통해 사고 예방률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표] 유사 입법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또한, 현행법 제29조에서는 낚시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로 범위를 확대하여 낚시인의 안전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낚시활동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갯바위, 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행법 제9조에서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낚시인 안전의 관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안전시설 설치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제4항의 안전장비 착용과 관련한 사항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8